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2009.09.07.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9.08.20. 김 영 신 의원외 5인
- 나. 회부일자 : 2009.08.24.
- 다. 상정일자 : 제14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9.09.07)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김 영 신 의원

가. 제안이유

마포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 2)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포구에 다문화가족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6조)

- 3)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 4)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3. 검토보고 (김건재 전문위원)

0 본 조례안은 김영신 의원 외 5인의 의원 발의로 2009년 8월 20일 마포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8월 24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음.

0 본 조례안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 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되었음.

0 최근 국제결혼의 급증에 따라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가족의 안정성 강화 그리고 사회통합 지원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바,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회적응 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촉진을 제고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0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현황을 보면, 2009년 5월말 현재(※행정안전부 자료)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167,090명으로 주요 출신국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이 다수임. 이중 서울시 거주자는 39,275명,

마포구는 1,463명이 거주(※2009년 8월말 현재 전수조사 중)하고 있음. 또한 국제결혼은 전체 결혼의 약 11.1%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일부농림 어업 지역 한국 남성의 경우는 약 40% 정도가 외국여성과 혼인(※가족사업 안내 자료)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상당수가 언어소통 문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자녀교육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의 제정은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 되어 있는바, 의원발의로 제출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조회(2009년 8 20일)한 결과 「조례제정 이의없음」으로 회신된 바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